

<목천>

이용 안내서



목 천 요 양 원

○ 인사말

“목천요양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”

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,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.

저희 목천요양원에서는 치매,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“사랑하고 섬기며 배풀며 살겠습니다” 라는 원혼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
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(孝)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



목천요양원 이용 안내서

1. 기관명 : 목천요양원
2. 대표자 : 임 정 민
3. 시설장 : 김 미 래
4. 설치신고일: 2018년 03월 20일
5. 주 소 :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1156
6. 전 화 : 041) 569-4029. 0992
7. 팩 스 : 041) 568-3137
8. 홈페이지 : naver.band.목천요양원.
다음카페(천안목천요양원)
9. 시설규모 ; 대지677㎡.
10. 건물면적 : 681.84㎡
11. 침 실 : 14개 (화장실과 목욕탕은 각 층에 1개)
12. 특별침실 : 1개
13. 차량보유 : 2대
14. 주차시설 : 요양원 건물 내 주차장과 건물 뒤쪽,
앞쪽에 주차 공간이 많이 있음.
15. 정 원 : 27명
16. 비급여항목 : 식 사 비 : 1끼 = 3,800원 (매년 변경 가능)
간 식 비 : 1,000원
이미용비 : 0원
17. 프로그램 : 인지프로그램, 신체프로그램, 여가프로그램
사회적적응훈련, 생일잔치,
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
18. 계약의사 : 서울W내과의원 월2회 방문진료
19. 가정방문간호사 : 서울W내과의원 (주1회)
20. 종사자 근무체계 (요일에 상관없이 365일 동일 근무체계)
주간 : 9:00 ~ 18:00 (각층에 2명 이상)
야간 : 18:00 ~ 익일 09:00 (각층에 1명)

21. 근무종사자

- 시설장 : 1명
- 사회복지사 : 2명
- 간호조무사 : 2명
- 영양보호사 : 13명
- 배식원 : 1명

22. 가입보험 : 화재보험, 배상책임보험.

-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: MG손해보험
- 화재보험 : 삼성화재 (2034.11.17.)
- 종사자 상해보험 : 한국사회복지 공제회
-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: 삼성화재
- 퇴직연금보험 : 교보생명

23.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: 시설급여(입소시설)

장기요양등급 1.2.3.4.5.

24.노인장기요양보험소개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,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25.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
① 적용대상

건강보험 가입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. 이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
한편, 공공부조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.

② 장기요양인정
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하여 모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일정한 신청 절차와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며,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 합니다.

③ 장기요양인정절차

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→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
→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→ 결과 통지(등급 인정되면
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.

26.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

1) 장기요양 1,2등급 수급자

2) 장기요양 3,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
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

가.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
-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
가능성이 높은 때
-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, 질병,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
곤란한 때
-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(주수발자)이 없을 때

나.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
다.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
-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
-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
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

3)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
인정 받은 수급자

-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,
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-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
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

27. 입소 시 필요한 준비물

1) 장기요양인정서

2) 표준장기요양급여계획서

3) 가족관계증명서

4) 어르신 신분증

5) 보호자 신분증

6) 건강검진결과지 (결핵, 전염병 포함)

=> 결과지 인쇄 날짜가 입소 전날까지로 되어있어야 함.

7) 의사 처방전이나 소견서

8) 드시는 약

9) 기타 개인적으로 필요한 옷이나 개인 물품 등

28. 운영규정 개요

- (1) 조직·인사·급여·회계·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.
- (2)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= 목천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27명
- (3)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(월 이용료, 기타비용부담액, 계약목적, 계약대상자, 계약기간, 입소보증금, 입소보증금의 반환,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- (4) 입소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.
- (5)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.
- (6)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.
- (7)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.
- (8)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.
- (9)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·면책범위에 관한 사항.
- (10)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.
- (11) 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회의설치, 운영에 관한 사항.

29. 목천요양원의 특성

- 지리적인 특성 : 목천IC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
교통 편리
- 환경적인 특성 : 복잡한 시내에서 벗어난 환경
- 내부적인 특성 : 가족적이며 화목한 분위기
- 프로그램의 특성 : 매월 어르신들의 생신잔치 시 에 보호자들을 초청
매주 수요일 기독교 예배 실시

30. 노인학대 예방 대책

- 1)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입소자(보호자)에게 제공
- 2)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
- 3)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
- 4) 시설에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